

공 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1003호

**수유동 141번지 일대(수유동 4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4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가. 공람기간: 2026. 07. 06. ~ 2026. 07. 20.(14일간)

나. 공람장소: 강북구청 주거정비과(☎02-901-2574)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58(코스타타워 8층)

다. 공람사유: 수유동 141번지 일대(수유동 4지역)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에 따라
주민공람

라. 공람내용: 수유동 141번지 일대(수유동 4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마. 기타사항: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공람 기간 내 공람 장소에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유동 141번지 일대(수유동 4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1.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수유동 14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 분	위 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 고
기준	강북구 수유동 141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이하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현황		93,814.5㎡	전체 : 446동 노후·불량 : 343동(76.9%)	-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 결정 조서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수유동 14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강북구 수유동 141번지 일대	-	증)93,814.5	93,814.5	-

○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명칭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수유동 14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위치 : 수유동 141번지 일대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 : 93,814.5㎡	노후·불량 주택이 혼재된 수유동 일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계획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지역 지정

나.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3,814.5	100.0	-
사업 시행 구역	공동주택 용지	소 계		73,222.7	78.0	-
		1구역	사업가능구역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3,131.2	14.0	-
		2구역	사업가능구역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1,236.3	12.0	-
		3구역	사업가능구역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3,241.2	14.1	-
		4구역	사업가능구역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0,433.2	11.1	-
		5구역	사업가능구역5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0,429.8	11.1	-
		6구역	사업가능구역6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4,751.0	15.7	-
	정비기반시설	소 계		17,165.1	18.3	-
		도로		13,928.4	14.8	-
		공원		3,198.7	3.4	-
		공공공지		38.0	0.1	종교용지(교회) 대토
	사업 시행 구역 외	자율 정비구역	소 계		3,426.7	3.7
A1			주택 및 점포겸용 주택용지	1,493.9	1.6	-
A2			주택 및 점포겸용 주택용지	417.3	0.4	-
A3			종교용지(교회)	286.3	0.3	-
A4			파출소	176.9	0.2	-
정비기반시설		도 로		1,052.3	1.2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다.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1) 도로 계획(안)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신설	중로	2	가	15	김산도로	357	중로1-가	수유동14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433 (269)	수유동 174-17	수유동 168-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43호 (’09.6.18)	-
변경	중로	3	가	10~12	국지도로	433 (269)	수유동 174-17	소로 2-마	일반도로			-
신설	소로	1	가	11	국지도로	167	중로2-가	소로 2-마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가	9	국지도로	90	소로2-나	중로2-가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나	9	국지도로	148	소로3-가	소로 2-가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다	8	국지도로	114	소로3-가	중로2-가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라	9	국지도로	55	중로3-가	소로 2-다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마	8	김산도로	325	중로3-가	수유동14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가	6	국지도로	18	소로 2-다	소로 2-나	일반도로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연장의 ()는 구역 내 해당

2) 주차장 계획(안)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사업가능구역1	-	2,637.6	2,637.6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3) 주차장 입체결정(안)

구분	도면표시	시설유형	위치	구분	규모	비고
신설	①	비도시계획시설 (공동주택)	사업가능구역1	길이	207m	●지상: 공동주택(비도시계획시설) ●지하1층: 주차장(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높이	지하1층~ 지표면-1.2m	
				연면적	2,637.6㎡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4) 공원 계획(안)

구분	도면표시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은모루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수유동 172-209 일원	918.0	584.0	1,502.0	1995.05.20. (서고 1995-141호)	-
신설	③	공원	소공원	수유동 166-1 일원	-	645.4	645.4	-	-
신설	④	공원	소공원	수유동 167-3 일원	-	1,051.3	1,051.3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5) 공공공지 계획(안)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⑤	공공공지	수유동 141 일원	-	38.0	38.0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구 분	설치기준	비 고
사업가능구역1	· 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100세대이상 ~ 1,000세대미만 기준으로 (세대당 2.5㎡) X 1.25 이상 설치	구역 내
사업가능구역2		구역 내
사업가능구역3		구역 내
사업가능구역4		구역 내
사업가능구역5		구역 내
사업가능구역6		구역 내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라. 교통계획(안)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사업시행구역 경계부	· 사업시행구역 주변 차량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 차량진출입 불허	※도면참고
차량진출입 구간	사업시행구역	· 사업시행구역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외 대상지 내 도로를 통해 차량진출입구 설치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도면 표시	사업구역	위 치	사업계획					비 고	
			면 적(㎡)				시행자		추진단계
			합 계	획 지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			
합 계			90,387.8	73,222.7	17,165.1	-	-	-	-
1구역	사업가능구역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수유동 171-2 일대	15,191.1	13,131.2	2,059.9	-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중	-
2구역	사업가능구역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수유동 170-22 일대	14,320.9	11,236.3	3,084.6	-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중	-
3구역	사업가능구역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수유동 166-73 일대	15,494.6	13,241.2	2,253.4	-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중	-
4구역	사업가능구역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수유동 172-148 일대	14,031.2	10,433.2	3,598.0	-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중	-
5구역	사업가능구역5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수유동 169-80 일대	13,396.4	10,429.8	2,966.6	-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중	-
6구역	사업가능구역6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수유동 167-56 일대	17,953.6	14,751.0	3,202.6	-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중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바. 모아주택 통합계획(안)

도면 표시	사업구역	위 치	면 적(㎡)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건축법」 제77조의 13)		비 고
				통합적용	완화적용	
합 계			73,222.7	-	-	-
1구역	사업가능구역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수유동 171-2 일대	13,131.2	해당없음		-
2구역	사업가능구역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수유동 170-22 일대	11,236.3	· 대지의 조정(제42조)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제44조) · 지하층의 설치(제53조) · 건폐율(제55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주차장법 제9조)	· 대지안의 조정(제42조) · 건폐율(제55조) · 용적률(제56조) ·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0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1조)	
3구역	사업가능구역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수유동 166-73 일대	13,241.2			
4구역	사업가능구역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수유동 172-148 일대	10,433.2	해당없음		-
5구역	사업가능구역5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수유동 169-80 일대	10,429.8	· 대지의 조정(제42조)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제44조) · 지하층의 설치(제53조) · 건폐율(제55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주차장법 제9조)	· 대지안의 조정(제42조) · 건폐율(제55조) · 용적률(제56조) ·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0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1조)	-
6구역	사업가능구역6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수유동 167-56 일대	14,751.0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사.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구 분	도면표시	내 용		비 고
사업 시행구역 내	1구역	건폐율	50% 이하	공동주택용지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용적률	기준 250% 이하 법적상한 300% 이하	
		높 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2구역	건폐율	50% 이하	공동주택용지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용적률	기준 250% 이하 법적상한 300% 이하	
		높 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3구역	건폐율	50% 이하	공동주택용지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용적률	기준 250% 이하 법적상한 300% 이하	
		높 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4구역	건폐율	50% 이하	공동주택용지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용적률	기준 250% 이하 법적상한 300% 이하	
		높 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5구역	건폐율	50% 이하	공동주택용지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용적률	기준 250% 이하 법적상한 300% 이하	
		높 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6구역	건폐율	50% 이하	공동주택용지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용적률	기준 250% 이하 법적상한 300% 이하	
		높 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사업 시행구역 외	A1	건폐율	60% 이하	주택 및 점포겸용 주택용지 (제2종일반(7층))
		용적률	기준 200% 이하	
		높 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A2	건폐율	60% 이하	주택 및 점포겸용 주택용지 (제2종일반(7층))
		용적률	기준 200% 이하	
		높 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A3	건폐율	60% 이하	종교용지(교회) (제2종일반(7층))
		용적률	기준 200% 이하	
		높 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A4	건폐율	60% 이하	과출소 (제2종일반(7층))
		용적률	기준 200% 이하	
		높 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법 제48조 및 제43조의 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아.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1)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사업가능구역 1~6	· 전 구역 건축한계선 3m 적용 · 가로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 건축한계선 내 전면공지는 일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 학교 등 주요 공공시설과 보행연계를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6m 지정)	※ 도면참고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사업가능구역 2~6 (한천로 144길, 한천로 140길, 도봉로 101길)	·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은 가로활성화가 필요한 주요 가로로 건축한계선에 맞추어 건축물의 저층부(1층 이상)를 설치하고, 해당 공간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조성 · 가로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의한 공동이용시설 ·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유도	
통경축 확보구간	한천로 144길변	· 백년시장~우이천의 가로축 연결성을 고려해 건축물 배치 계획 시 경관 및 조망을 위해 통경축 확보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용도에 관한 계획(안)

도면표시	구분	계획내용	비 고
1구역 ~ 6구역	유형	· 공동주택용지	사업시행구역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A1 ~ A4	유형	· 주택 및 점포겸용 주택용지 등	사업시행구역 외
	용도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하여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자.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안)

구 분		위 치	전체 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 고 (임대주택비율)
도면표시	사업구역					
합 계			2,447	441	-	18.02%
1구역	사업가능구역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수유동 171-2일대	438	75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17.12%
2구역	사업가능구역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수유동 170-22일대	378	70		18.52%
3구역	사업가능구역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수유동 166-73일대	445	84		18.88%
4구역	사업가능구역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수유동 172-148 일대	347	55		15.85%
5구역	사업가능구역5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수유동 169-80 일대	347	64		18.44%
6구역	사업가능구역6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수유동 167-56 일대	492	93		18.90%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시행인가 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여 제출할 것

○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통합심의 직전연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며,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신청 시, 직전연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정계수를 확정함

- 산식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¹⁾ / 사업시행구역 평균 공시지가²⁾

1) 매년 서울시가 산정하여 공개하며, “재개발사업”의 평균공시지가 적용

2)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모든 용도지역의 대지(지목)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공시지가(면적 가중평균)

※ 2025년 기준 사업성보정계수 산정

1구역 : 6,302,982원/㎡ / 2,965,137원/㎡ = 2.13(1.5 적용)

2구역 : 6,302,982원/㎡ / 2,619,828원/㎡ = 2.41(1.5 적용)

3구역 : 6,302,982원/㎡ / 2,862,930원/㎡ = 2.20(1.5 적용)

4구역 : 6,302,982원/㎡ / 3,417,058원/㎡ = 1.84(1.5 적용)

5구역 : 6,302,982원/㎡ / 2,993,067원/㎡ = 2.11(1.5 적용)

6구역 : 6,302,982원/㎡ / 2,725,688원/㎡ = 2.31(1.5 적용)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방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시 개정 조례에 따름)

1) 조례 제44조의4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비율 (용도지역 상향시)

$$\text{임대주택 공급비율} = \text{증가된 용적률} \times 100\text{분의 } 50^{1),2)} \div \text{사업성 보정계수}$$

1) 조례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공공참여)의 경우 100분의 30 적용

2) 관리지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100분의 15까지 완화 가능

2)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상한 (임대주택 건설 특례)

$$\text{용적률 상한} = a + (\text{해당 공공임대 주택건설비용} \times 100(\%) \times \alpha \times \beta) + b + c$$

■ α (적용계수) = 2.5 (단, 준주거지역의 경우 5)■ β (보정계수) = 사업성 보정계수■ a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b =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조례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가된 용적률(%)■ c = 관리지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용적률(%) (최대 25 퍼센트 이내)

차.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3,814.5	—	93,814.5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918.0	증)584.0	1,502.0	1.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92,896.5	감)73,806.7	19,089.8	20.4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73,222.7	73,222.7	78.0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카.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구 분	도면표시	사업구역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	증) 90,387.8	90,387.8	—
신설	특별건축구역	사업가능구역1	—	증) 90,387.8	90,387.8	—
		사업가능구역2				
		사업가능구역3				
		사업가능구역4				
		사업가능구역5				
		사업가능구역6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상기의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시행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특례

구 분	내 용	비 고
건축법	대지안의 조정(제42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대지안의 공지(제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1조)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의 배치(제10조), 기준척도(제13조), 비상급수시설(제35조), 난방설비 등(제37조) 등	-
통합적용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타. 경미한 변경에 관한 계획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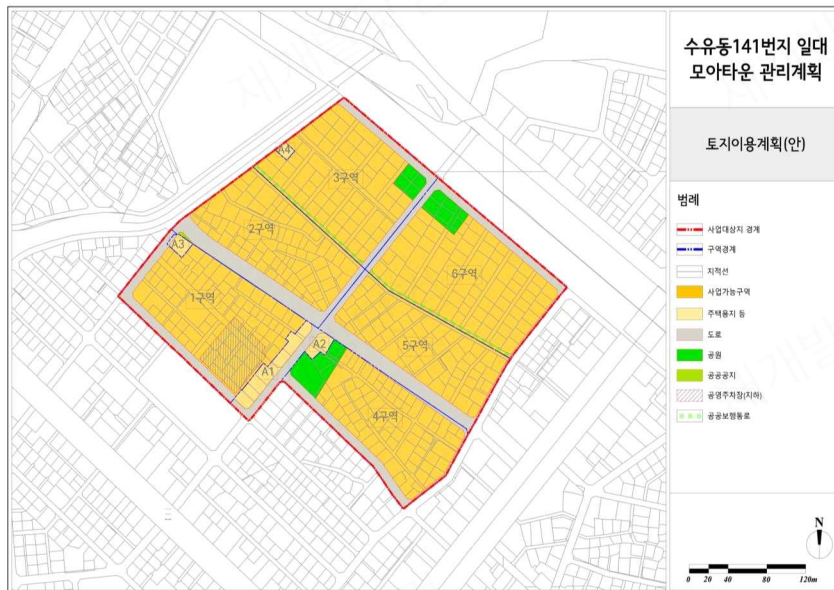
- 관리지역 면적을 100분의 5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 사업시행기간을 계획된 기간의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 관리계획을 법 제43조의3 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완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 계산착오·오기·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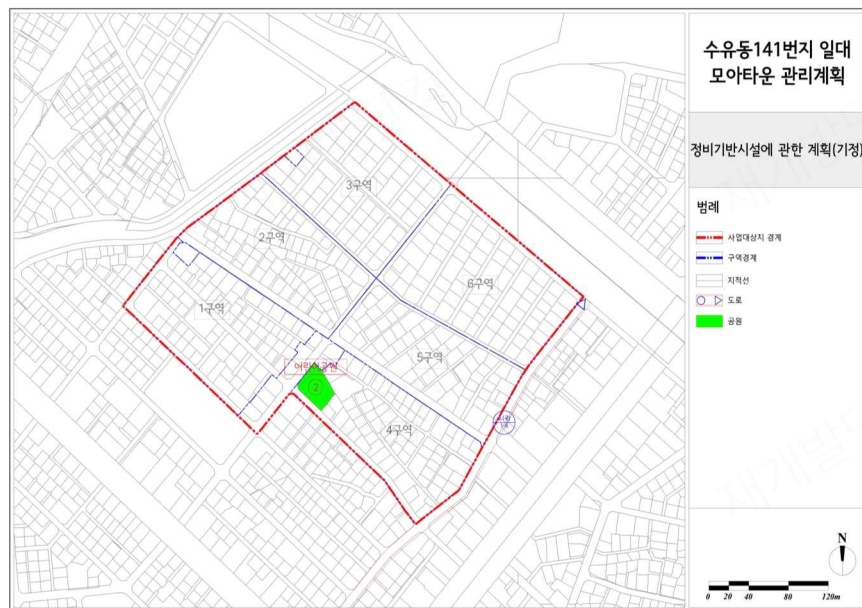
○ 관리지역 결정에 관한 계획(안)



○ 토지이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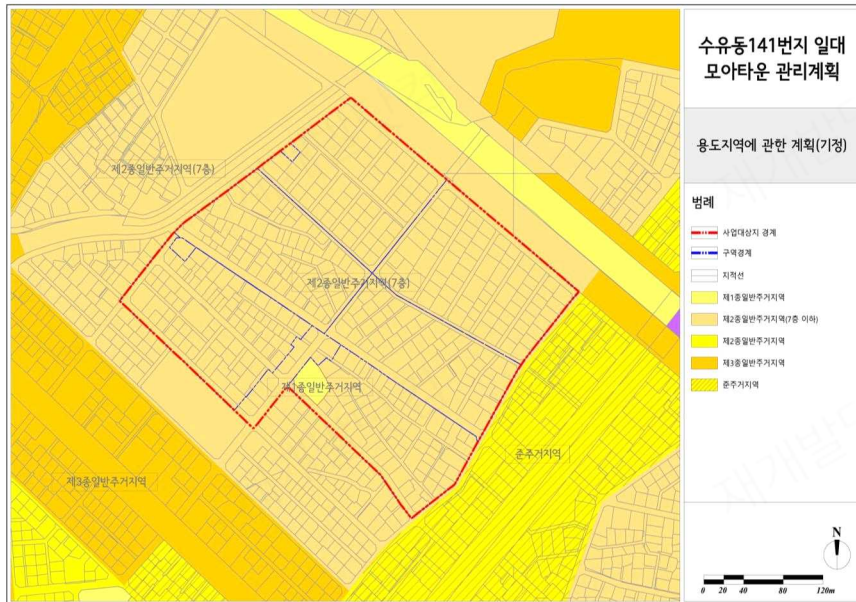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계획(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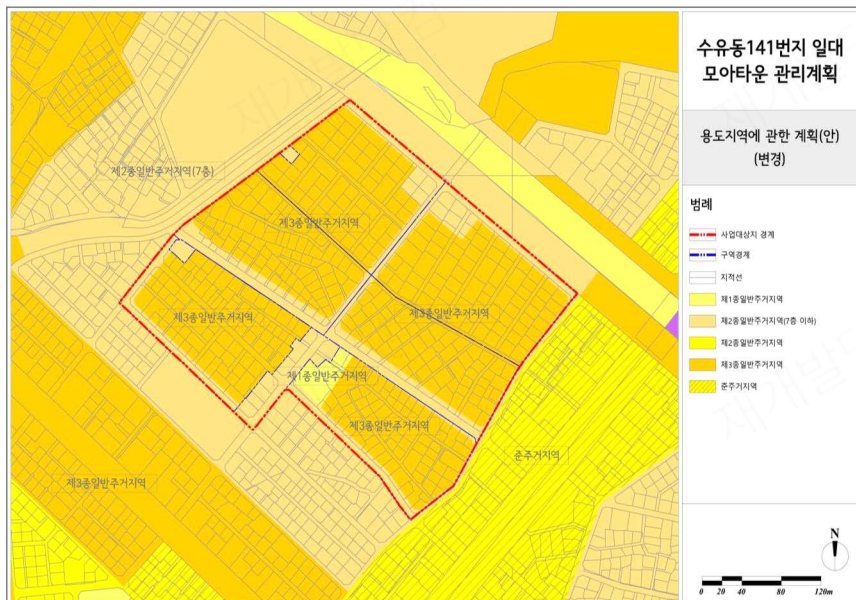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안)(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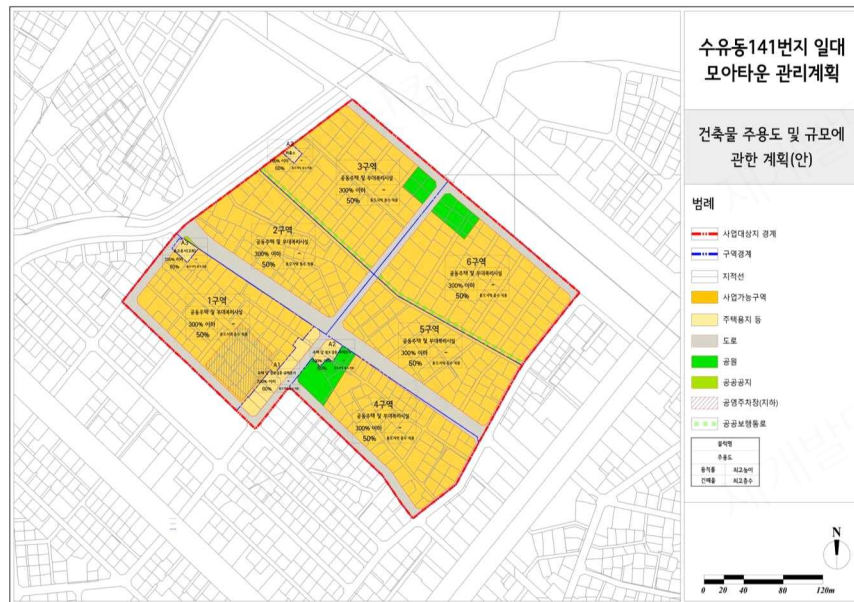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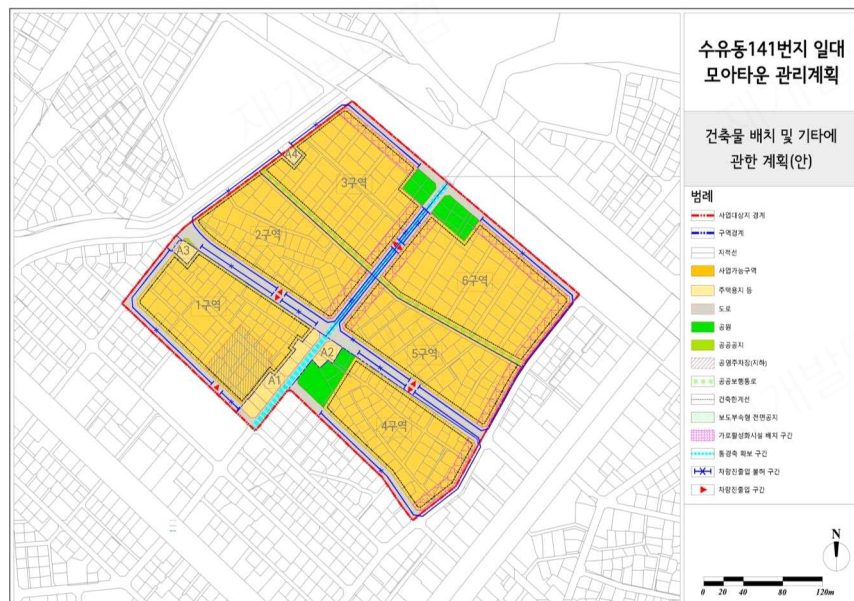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안)(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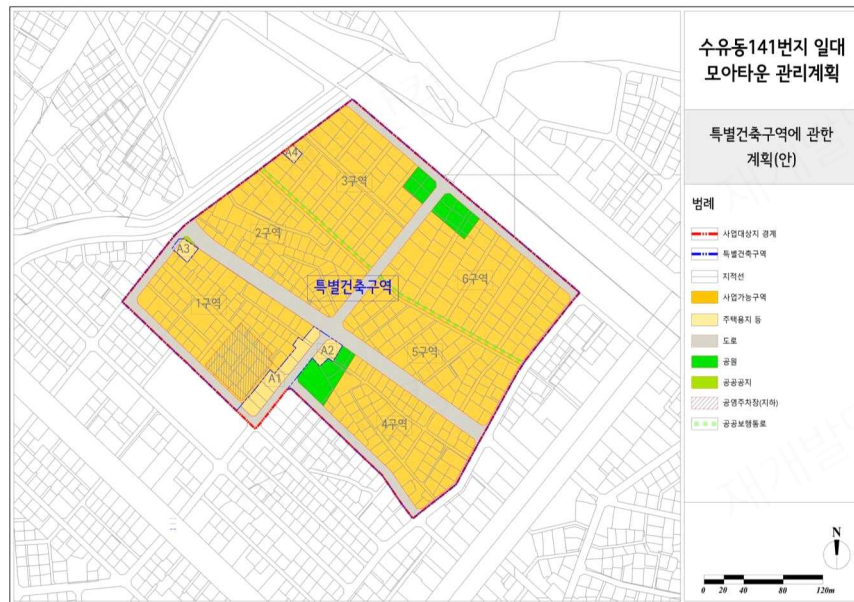
○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 건축물 배치 및 기타에 관한 계획(안)



○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의견서

공 고 명	수유동 141번지 일대(수유동 4차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공 람 기 간	2026. 07. 06. ~ 2026. 07. 20.
의견 제출인	성 명 : _____ (전화 : _____)
	주 소 : _____
	소유물건 : 강북구 미아동 _____
의견 내용	

2026. . .

의견 제출자 : _____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

기 타

2026년 하반기 일반직공무원 정년퇴직 인사발령 통보

【발령 제105호】

연번	성 명	발령사항	현 직	
			소 속	직 급
1	양 성 식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6. 06. 30.자로 정년퇴직	강 북 구	지 방 행 정 사 무 관
2	강 상 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6. 06. 30.자로 정년퇴직	치 수 과	지 방 시 설 사 무 관
3	박 효 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6. 06. 30.자로 정년퇴직	구 의 회 사 무 국	지 방 행 정 사 무 관
4	정 영 주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6. 06. 30.자로 정년퇴직	지역보건과	지 방 간 호 사 무 관
5	권 태 형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6. 06. 30.자로 정년퇴직	송 천 동	지 방 행 정 사 무 관
6	이 종 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6. 06. 30.자로 정년퇴직	삼 각 산 동	지 방 행 정 사 무 관

※ 시행일자: 2026. 6. 30. 자. 끝.

2026년 하반기 일반직공무원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 명령 통보

【발령 제106호】

연번	성 명	발령사항	현 직	
			소 속	직 급
1	송 우 석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 규정에 따라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함 (기간: 2026. 7. 1. ~ 2027. 6. 29.)	행정안전국	지방서기관

※ 시행일자: 2026. 7. 1. 자. 끝.